#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

(이희원 의원 발의)

차

섯

의안 번호 2393 발 의 년 월 일: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:이희원 의원(1명)

> 자: 곽향기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원중, 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 도문열, 민병주, 박 석, 서상열, 신복자, 유만희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 이종환, 정지웅, 최민규, 홍국표 의원(24명)

### 1. 제안이유

○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 등의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나. 교육감의 헌혈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규정(안 제4조)
- 다.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의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.
  -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헌혈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  - 2.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
- 3.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
- 4.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(사업)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.
  - 1.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
  - 2.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
  - 3.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
- 4.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, 의료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수 있다.
- 제7조(포상)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, 기관 또는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

연번	조항	취대상여부	판단 내용
1	제5조(사업)	Δ	헌혈교육 시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향후 시행하려는 사업비용을 추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가 적어 비용추계가 곤란함
2	제6조(협력체계 구축)	×	협력체계 구축은 통상 별도의 추가비용) 을 수반하지 않음
3	제7조(포상)	×	별도의 추가비용2)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 - 이 안 제5조(사업)에 따른 헌혈교육 사업비용은 현재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함
  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또한 헌혈교육 관련 소요금액을 추정하려면 먼저 헌혈교육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요되는 비용항목을 식별하는 한편 추가로 헌혈교육 사업에 대한 단가 (프로그램 운영비, 인건비, 교재인쇄비 등) 검토가 필요할 것로 보임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제승

**2** 02-2180-7953

e-mail: smclt22@seoul.go.kr

<sup>1)</sup> 협력체계 구축(Ex. 업무협조 MOU)은 **통상적으로** 당해연도 일회성 **소액지출**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 (Ex. 현수막, 입간판, 업무 협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지출)되므로 **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**됨 ⇒ 예외적으로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단일사업으로 추진 시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향후 추진여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 요소가 없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

<sup>2)</sup> 또한 표창은 통상적으로 부상을 수반하지 않아 표창제작비(1인당 5,500원)만 소요되므로 부서내 사무관리비 등으로 충당가능 하여 서울시(교육청 포함)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

<sup>⇒</sup>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없이 표창을 수여하여야 함